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837호

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,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우리나라는 WA, NSG, MTCR,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, '21년 4대 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반영

2. 주요내용

- 가. '21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, 통제사양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1, 2, 2의2, 3, 4에 반영
- 나. 기타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상 경미한 영문오류 등 수정사항을 고시 별지2의2에 반영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무역 안보정책과장,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(전화 : 044-203-4836, 전자우편: dhkdkt1018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e.go.kr → 예산・법령 → 고시・공고 → 공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837호

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별표1, 별표2, 별표2의2, 별표3, 별표4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하고, 별지2의2를 별지와 같이 하다.

부 칙 〈제2022-837, 2022.12.O.〉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 별표와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공고란)를 참조바랍니다.